

자동차, 중형이상 오토바이

○자동차나 중형이상 오토바이(배기량 126cc 이상)의 등록·검사(차검)

자동차나 중형이상 오토바이를 구입, 매각, 폐차하거나 소유자의 주소변경, 명의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 운송지국 창구로 신고하십시오. 또한, 일정기간마다 검사(차검)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(단,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51cc 이상)

문의처 고베운송관리부(우사자키청사)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하마마치(神戸市東灘区魚崎浜町)
34-2

등록수속안내 050-5540-2066

○차고증명

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는 자동차의 보관장소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「차고증명」이 필요합니다. 차고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해 주십시오.

※참고(자동차보유관계 원스톱 서비스) <https://www.oss.mlit.go.jp/portal/>

신청에 필요한 서류

- (1) 신청서
- (2) 표장교부신청서
- (3) 차고소재지의 약도
- (4) 차고 배치도
- (5) 차고를 정당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

문의처 니시노미야경찰서 니시노미야시 츠다초(津田町) 3-3 0798-33-0110

고시엔경찰서 니시노미야시 고시엔 7반초(甲子園七番町) 11-14 0798-41-0110

○자동차보험 가입

자동차보험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(자배책보험)과 가입이 임의인 보험(임의보험)이 있습니다.

※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바랍니다.